

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0호 2000. 4. 21)

의회운영위원회
2000. 4. 27

1. 심사경과

- 가. 2000. 4. 21 최정경의원의 4인 발의
- 나. 2000. 4. 21 의회운영위원회 회부
- 다. 2000. 4. 27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서면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,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기로 함(안 제2조)
- (2)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(안 제3조)
- (3)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15일,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하기로 함(안 제4조)
- (4)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,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·의결함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국연)

-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 개정과 정례회를 매년 2회로 구분 개최하며,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5일(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·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),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0일에 집회하고

또한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, 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, 형식·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6. 소수의견 : 없음